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는 구성 이래 5번의 정기회의와 3번의 임시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법제위원회는 현행 회칙이 당면한 크고 작은 한계점들을 인지해 왔고, 현실적인 요구와 법리적 합리성 모두를 고려한 회칙 개정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회칙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동아리 대표자회의 정기회의의 소집 시기 변경 제안 이유 요지

동아리 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2024년 이전 회칙에서 규정되던 바 3월, 6월, 9월, 12월 말 소집에서 2024년도 7월 개최된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3차 임시회의의 개정으로 5월, 9월, 12월 말 소집으로 변경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첫 정기회의의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특별기구의 인준이 늦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있어 첫 정기회의의 시기를 다시 3월 말로 변경하는 한편, 정기회의의 횟수를 줄이고자 하였던 기존 개정안의 취지는 유지하여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정기회의 소집 시기를 3월, 9월, 12월 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문법적 오류 정리 및 문언의 일관성 확보 등 요지

문법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교정하였으며, 같은 의미임에도 띄어쓰기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하던 문언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추도록 통일하였습니다.

2. 신·구조문 대비표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장 총칙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구조문	신조문
제4조(총동아리연합회의 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3. 자치기구: 분과위원회,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동아리, 일반동아리 4. 특별기구: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위원회, 총동아리연석회의	제4조(총동아리연합회의 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3. 자치기구: 분과위원회,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동아리, 일반동아리 4. 특별기구: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위원회 (삭제)

제2장 의결기구

제2절 동아리 총회

구조문	신조문
제21조(동아리 총회의 의장) ① 동아리 총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다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 단위일 때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②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하는 경우 동아리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임시 의장</u> 을 선출한다.	제21조(동아리 총회의 의장) ① 동아리 총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다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 단위일 때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②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하는 경우 동아리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의장</u> 을 선출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3절 동아리 총투표

구조문	신조문
제27조(동아리 총투표의 권한) 총투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의결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27조(동아리 총투표의 권한) <u>동아리 총투표</u> 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의결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2장 의결기구

제4절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조문	신조문
제38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소집) ①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5월, 9월, 12월 말에 소집한다. 단, 전후 7일 이내의 소집은 정기회의로 인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고한다. ④ 정기회의 소집은 집회 14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⑤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 3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38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소집) ①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3월, 9월, 12월 말에 소집한다. 단, 전후 7일 이내의 소집은 정기회의로 인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고한다. ④ 정기회의 소집은 집회 14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⑤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 3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5절 동아리운영위원회

구조문	신조문
제52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아	제52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안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아

<p>리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p> <p>1.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p> <p>2.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p>	<p>리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p> <p>1.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p> <p>2.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p>
---	---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장단

구조문	신조문
<p>제58조(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지위)</p> <p>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의결기관의 의장이 된다.</p> <p>②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할 때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1조(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탄핵)</p> <p>① 총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본 회칙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안을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탄핵안 상정 요건은 제143조제3호를 준용한다.</p> <p>②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장은 안건 상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아리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만 한다.</p> <p>③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면 당사자는 탄핵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p> <p>④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에 심의 및 의결한다. 이때, 의결은 동아리 대표자회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제58조(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지위)</p> <p>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의결기관의 의장이 된다.</p> <p>②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할 때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1조(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탄핵)</p> <p>① 총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본 회칙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안을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탄핵안 상정 요건은 제143조제3호를 준용한다.</p> <p>②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장은 안건 상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아리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만 한다.</p> <p>③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면 당사자는 탄핵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p> <p>④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에 심의 및 의결한다. 이때, 의결은 동아리 대표자회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제3장 집행기구

제2절 집행위원회

구조문	신조문
<p>제64조(집행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p> <p>①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총괄 하에 본회 모든 사업의 집행을 맡는다.</p> <p>② 집행위원회는 동아리 총회,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총동아리연합회 관련 사업 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64조(집행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p> <p>①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총괄 하에 본회 모든 사업의 집행을 맡는다.</p> <p>②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동아리 총회,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총동아리연합회 관련 사업의 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③ 본회의 사업 중 시설 및 공간,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재무, 법무 등 전문적·기술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세부 사안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65조(집행위원회의 의무)</p> <p>① 집행위원회는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u>집행해야 할</u> 의무를 진다.</p> <p>② 집행위원회는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진다.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p> <p>제66조(집행위원회의 임명 및 구성)</p> <p>① 집행위원회 체계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결정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p> <p>② 집행위원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임명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p>	<p>③ 본회의 사업 중 시설 및 공간,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재무, 법무 등 전문적·기술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세부 사안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65조(집행위원회의 의무)</p> <p>① 집행위원회는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u>집행할</u> 의무를 진다.</p> <p>② 집행위원회는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진다.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p> <p>제66조(집행위원회의 임명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p> <p>① 집행위원회 체계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결정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p> <p>② 집행위원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임명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p>
--	--

제3장 집행기구

제3절 비상대책위원회

구조문	신조문
<p>제68조(비상대책위원회의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u>총동아리연합회</u>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p>	<p>제68조(비상대책위원회의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u>(삭제)</u>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p>

제4장 자치기구

제1절 분과위원회

구조문	신조문
<p>제74조(분과위원장단)</p> <p>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동아리운영위원이 된다.</p> <p>②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본조 신설)</p>	<p>제74조(분과위원장단)</p> <p>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동아리운영위원이 된다.</p> <p>②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p> <p>③ 분과위원장단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u>참석할 의무를</u> 진다.</p>
<p>제7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 회칙을 벗어</p>	<p>제7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분과위원회는 본회의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p>

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당 분과위원회의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	-------------------------

제4장 자치기구

제2절 중앙동아리

구조문	신조문
<p>제79조(준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p> <p>① 신규등록을 통해 준동아리가 된 동아리는 2년 뒤 승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강등을 통해 정동아리에서 준동아리로 강등된 동아리는 1년 뒤 승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p> <p>② 준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발언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p> <p>③ 준동아리의 회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p> <p>④ 준동아리는 모든 정동아리가 자치공간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자치공간이 남았을 경우 남은 자치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p> <p>⑤ 준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p> <p>⑥ 준동아리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p> <p>제80조(정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p> <p>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단체의 구성원만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p> <p>② 정동아리만이 본회로부터 정기 지원금과 자치공간에 대하여 보장받는다.</p> <p>③ 승격 절차를 통해 정동아리로 승격된 동아리는 준동아리의 권한과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p> <p>④ 정동아리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p> <p>(분조 신설)</p>	<p>제79조(중앙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p> <p>(이동)</p> <p>① 중앙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p> <p>② 중앙동아리의 회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p> <p>(이동)</p> <p>③ 중앙동아리의 대표자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p> <p>④ 중앙동아리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p> <p>제80조(정동아리의 권한)</p> <p>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단체의 구성원만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p> <p>② 정동아리만이 본회로부터 정기 지원금과 자치공간에 대하여 보장받는다.</p> <p>(삭제)</p> <p>제80조의2(준동아리의 권한)</p> <p>① 신규등록을 통해 준동아리가 된 동아리는 2년 뒤 승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강등을 통해 정동아리에서 준동아리로 강등된 동아리는 1년 뒤 승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p> <p>② 준동아리는 모든 정동아리가 자치공간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자치공간이 남았을 경우 남은 자치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p>

제4장 자치기구

제2절의2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구조문	신조문
<p>제81조의3(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p> <p>①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은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동아리운영위원이 된다.</p> <p>②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p> <p>(본조 신설)</p> <p>제81조의4(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업무 및 권한)</p> <p>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에서 본회의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p>	<p>제81조의3(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p> <p>①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은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동아리운영위원이 된다.</p> <p>②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p> <p>③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p> <p>제81조의4(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업무 및 권한)</p> <p>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본회의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p>

제4장 자치기구

제3절 국제캠퍼스 동아리

구조문	신조문
<p>제82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지위)</p> <p>국제캠퍼스 동아리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지부를 두며 <u>본회 회칙</u>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치기구이다.</p> <p>제83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자격 및 등록 절차)</p> <p>①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절차를 거쳐 인준받은 동아리만이 1년간 국제캠퍼스 동아리 지위를 얻는다.</p> <p>② 일반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1부 3.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u>활동 보고서</u> 1부 <p>3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연간 주요 사업 및 <u>활동 계획서</u> 1부 5. 국제캠퍼스 생활 단위 재학생 10명 이상의 <u>회원 명단</u>(단, 한 단과대의 비율이 50% 이하) 1부 6. 정규회원(재적생)의 재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p>③ 등록 절차는 제114조제1항을 준용하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한다.</p>	<p>제82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지위)</p> <p>국제캠퍼스 동아리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지부를 두며 <u>본 회칙</u>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치기구이다.</p> <p>제83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자격 및 등록 절차)</p> <p>①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절차를 거쳐 인준받은 동아리만이 1년간 국제캠퍼스 동아리 지위를 얻는다.</p> <p>② 일반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1부 3.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u>활동보고서</u> 1부 <p>3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연간 주요 사업 및 <u>활동계획서</u> 1부 5. 국제캠퍼스 생활 단위 재학생 10명 이상의 <u>회원명단</u>(단, 한 단과대의 비율이 50% 이하) 1부 6. 정규회원(재적생)의 재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p>③ 등록 절차는 제114조제1항을 준용하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한다.</p>

	원회의 의결로 인준한다.
--	---------------

제4장 자치기구

제4절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구조문	신조문
<p>제89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p> <p>①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총동아리연석회의의 구성원이 된다.</p> <p>②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은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세칙을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본조 신설)</p>	<p>제89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p> <p>①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한다.</p> <p>②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은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세칙을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p> <p>③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p>
<p>제90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의무)</p> <p>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와 총동아리연석회의에 성실히 참석할 의무를 진다.</p>	<p>제90조 (삭제)</p>

제4장 자치기구

제6절 일반동아리

구조문	신조문
<p>제94조(일반동아리의 자격 및 등록 절차)</p> <p>① 일반동아리는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를 제외한 모든 동아리로 인정되는 동아리, 학회 등을 의미한다.</p> <p>② 일반동아리 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동아리 <u>일반등록</u> 신청서 1부 2. 회칙 1부 3.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u>활동 보고서</u> 1부 <p>3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연간 주요 사업 및 <u>활동 계획서</u> 1부 5.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1부 6. 발기인(회원)의 명부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p>③ 일반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되는 것으로 한다. (본조 신설)</p>	<p>제94조(일반동아리의 자격 및 등록 절차)</p> <p>① 일반동아리는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를 제외한 모든 동아리로 인정되는 동아리, 학회 등을 의미한다.</p> <p>② 일반동아리 <u>상시등록</u> 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동아리 <u>상시등록</u> 신청서 1부 2. 회칙 1부 3.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u>활동보고서</u> 1부 <p>3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연간 주요 사업 및 <u>활동계획서</u> 1부 5.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1부 6. 발기인(회원)의 명부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p>③ 일반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되는 것으로 한다.</p> <p>④ 일반동아리 <u>상시등록</u>의 효력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p>

유지된다.

제5장 특별기구

제2절 법제위원회

구조문

제104조(법제위원회의 지위)

법제위원회는 **본회 회칙** 개정 및 세칙 제·개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제105조(법제위원회의 역할)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안 또는 세칙 제·개정안 작성 및 검토
2. 회칙 및 세칙 등(이하 **법제**)에 근거한 해석 및 해석례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제, 해석례를 담은 규정집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자치기구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리적 자문 및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6조(법제위원회의 구성)

- ① 법제위원회에 법제위원을 둔다.
- ②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다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의 자격을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이상
 2.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중 2인
 3. 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추가**) 2인 이상 4인 이하
 4. 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추가**) 2인 이하
- ③ 본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제위원의 구성 과정에서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동아리운영위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이 선임될 경우 우선적으로 선임을 진행한 후 잔여 법제위원석에 대해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임한다.
- ④ 법제위원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때로부터 법제위원으로서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 ⑤ 법제위원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 회의까지로 한다.
- ⑥ 법제위원은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법제위원의 직위를 상실한다.
- ⑦ 법제위원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신조문

제104조(법제위원회의 지위)

법제위원회는 **본 회칙** 개정 및 세칙 제·개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제105조(법제위원회의 역할)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안 또는 세칙 제·개정안 작성 및 검토
2. 회칙 및 세칙 등(**삭제**)에 근거한 해석 및 해석례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제, 해석례를 담은 규정집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자치기구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리적 자문 및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6조(법제위원회의 구성)

- ① 법제위원회에 법제위원을 둔다.
- ②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다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의 자격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이상
 2.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중 2인
 3. 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중** 2인 이상 4인 이하
 4. 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중** 2인 이하
- ③ 본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제위원의 구성 과정에서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동아리운영위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이 선임될 경우 우선적으로 선임을 진행한 후 잔여 법제위원석에 대해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임한다.
- ④ 법제위원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때로부터 법제위원으로서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 ⑤ 법제위원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까지로 한다.
- ⑥ 법제위원은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법제위원의 직위를 상실한다.
- ⑦ 법제위원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p>할 수 없을 때에는 신임 법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새로 선임된 위원에 인준은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p> <p>⑧ 11월 선거의 종료로 인하여 해당 단위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차기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까지 법제위원 직위를 유지한다.</p>	<p>할 수 없을 때에는 신임 법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새로 선임된 위원에 인준은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p> <p>⑧ 11월 선거의 종료로 인하여 해당 단위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차기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까지 법제위원 직위를 유지한다.</p>
---	---

제6장 심사

제1절 등록 및 승격

구조문	신조문
<p>제115조(신규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최근 2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4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한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2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5.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6. 최근 2년간 결산안 1부 6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6의3. 반드시 결산안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 7. 동아리 지원금 <u>사용 계획서</u> 1부 8.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9. 발기인(회원)명단 1부 9의2. 반드시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30명 이상의 재적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9의3.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각각 50% 이하이어야 한다. 10. 발기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정회원(재적생)의 재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11. 중앙동아리 회원 100명 이상의 지지서명 11의2. 중앙동아리 등록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현 중앙동아리 대표자 5분의 2 이상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p>제123조(징계 유형 및 통칙) ① 징계 유형에는 시정 요구, 주의, 경고, 강등, 탈퇴가</p>	<p>제115조(신규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최근 2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4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한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2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5.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6. 최근 2년간 결산안 1부 6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6의3. 반드시 결산안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 7. 동아리 지원금 <u>사용계획서</u> 1부 8.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9. 발기인(회원)명단 1부 9의2. 반드시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30명 이상의 재적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9의3.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각각 50% 이하이어야 한다. 10. 발기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정회원(재적생)의 재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11. 중앙동아리 회원 100명 이상의 지지서명 11의2. 중앙동아리 등록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현 중앙동아리 대표자 5분의 2 이상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p>제123조(징계 유형 및 통칙) ① 징계 유형에는 시정 요구, 주의, 경고, 강등, 탈퇴가</p>

있다.

- ② 동아리운영위원회 시정 요구, 의결을 통해 주의와 경고를 징계할 수 있다.
- ③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강등과 탈퇴를 징계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 이상의 징계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전환한다.
- ⑥ 주의 및 경고 부과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 주의 및 경고 안건이 상정되었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및 임원진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발언 및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다.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해당 동아리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불복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징계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5. 본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제기 시점에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징계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123조의2(시정 요구)

- ①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 ② 본조 제1항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부여할 수 없다.
- ③ 징계 부과 절차는 제123조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④ 시정 요구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 시정 요구 안건이 상정되었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2.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및 임원진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발언 및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다.
 -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 요구 여부를 의결한다.

있다.

- ② 동아리운영위원회 시정 요구, 의결을 통해 주의와 경고를 징계할 수 있다.
- ③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강등과 탈퇴를 징계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 이상의 징계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전환한다.
- ⑥ 주의 및 경고 부과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 주의 및 경고 안건이 상정되었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및 임원진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발언을 할 수 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해당 동아리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불복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징계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5. 본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제기 시점에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징계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123조의2(시정 요구)

- ①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 ② 본조 제1항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부여할 수 없다.
- ③ 징계 부과 절차는 제123조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④ 시정 요구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 시정 요구 안건이 상정되었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2.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및 임원진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발언을 할 수 있고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다.
 -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p>4.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 요구 내용을 의결한다. 이때, 시정 요구 내용은 본조 제1항의 사유에 한한다.</p> <p>⑤ 시정 요구를 받은 동아리는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 요구 여부를 의결한다.</p> <p>4.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 요구 내용을 의결한다. 이때, 시정 요구 내용은 본조 제1항의 사유에 한한다.</p> <p>⑤ 시정 요구를 받은 동아리는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	---

제6장의2 집행위원회 감사

구조문	신조문
<p>제129조의4(집행위원회 감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기 시작일로부터 감사 일자까지의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서 1부 2. 임기 종료일까지의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3. 임기 시작일로부터 감사 일자까지의 결산안 1부 3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3의3. 반드시 결산안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 3의4.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 4. 연간 예산안 1부 	<p>제129조의4(집행위원회 감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기 시작일로부터 감사 일자까지의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2. 임기 종료일까지의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3. 임기 시작일로부터 감사 일자까지의 결산안 1부 3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3의3. 반드시 결산안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 3의4.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 4. 연간 예산안 1부

제7장 선거

구조문	신조문
<p>제131조(선거권)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동아리: 중앙동아리 당 최소 30인에서 최대 60인까지의 회원 2. 국제캠퍼스 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당 최소 10인에서 최대 20인까지의 회원 3.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당 최대 60인까지의 회원 <p>제133조(선거 시기)</p> <p>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매년 2학기 말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p>	<p>제131조(선거권)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동아리: 중앙동아리당 최소 30인에서 최대 60인까지의 회원 2. 국제캠퍼스 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당 최소 10인에서 최대 20인까지의 회원 3.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당 최대 60인까지의 회원 <p>제133조(선거 시기)</p> <p>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매년 2학기 말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p>

<p>② 자치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에 따른다.</p> <p>제134조(보궐선거)</p> <p>① 9월 전에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p> <p>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p> <p>③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로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p>제136조(선거의 기타)</p> <p>기타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p>	<p>② 자치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을 따른다.</p> <p>제134조(보궐선거)</p> <p>① 9월 전에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p> <p>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p> <p>③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로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p>제136조(선거의 기타)</p> <p>기타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p>
---	--

제8장 재정

구조문	신조문
<p>제142조(이월)</p> <p>① 신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 개시 시 예산의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꾸리는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 예산의 잉여금이 0원 미만일 경우, 전대 집행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p> <p>② 이월 전 행사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전대 집행위원회가 책임지고 지급하되, 불가피할 경우 후대 집행위원회가 이월 받는다.</p>	<p>제142조(이월)</p> <p>① 신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 개시 시 예산의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꾸리는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 예산의 잉여금이 0원 미만일 경우 전대 집행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p> <p>② 이월 전 행사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전대 집행위원회가 책임지고 지급하되, 불가피할 경우 후대 집행위원회가 이월 받는다.</p>

제9장 법제

구조문	신조문
<p>제144조(회칙 개정안의 공고)</p> <p>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 <u>신</u>, 구조문 대비표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p>제146조(회칙의 정리)</p>	<p>제144조(회칙 개정안의 공고)</p> <p>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 <u>신·구조문</u> 대비표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p>제146조(회칙의 정리)</p>

<p>① 회칙의 조항, 자구, 숫자 또는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칙의 본 의도를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p> <p>② 정비에 관한 기준은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공인한 법령 정비기준의 내용을 따른다.</p> <p>제149조(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p> <p>①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p>제151조(소급적용 여부)</p> <p>① 본회 회원의 행위나 사건으로 인한 회칙 적용은 행위 완료 시점 당시의 회칙에 따른다.</p> <p>② 누적된 징계의 효력은 회칙의 개정 시점과 상관없이 유지된다.</p> <p>제152조(회칙의 흡결)</p> <p>본회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에 의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본교 규정이나 대한민국 헌법 및 그 하위 법규, 그리고 관습과 관례에 의한다.</p>	<p>① 회칙의 조항, 자구, 숫자 또는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칙의 본 의도를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p> <p>② 정비에 관한 기준은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공인한 법령 정비기준의 내용을 따른다.</p> <p>제149조(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p> <p>(삭제)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p>제151조(소급적용 여부)</p> <p>① 본회 회원의 행위나 사건으로 인한 회칙 적용은 행위 완료 시점 당시의 회칙을 따른다.</p> <p>② 누적된 징계의 효력은 회칙의 개정 시점과 상관없이 유지된다.</p> <p>제152조(회칙의 흡결)</p> <p>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을 따르며, 이외의 경우에는 본교 규정이나 대한민국 헌법 및 그 하위 법규, 그리고 관습과 관례에 의한다.</p>
<h2>부칙</h2>	
<p>구조문</p>	<p>신조문</p>
<p>(본조신설)</p>	<p>제1조(일반동아리 상시등록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p> <p>본 회칙의 공포 당시 일반동아리로 등록되어 있던 동아리에 대해서는 제9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포일로부터 3년간 일반동아리 상시등록의 효력을 유지한다.</p>

3. 회칙 개정안 제출자 명단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제3대 학술교양분과위원장	박하성	법제위원 제4대 체육분과위원장	김두현
법제위원 중앙동아리 YRC 회장	김서윤	법제위원 중앙동아리 하랑 회장	유진
법제위원 제46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이윤상	법제위원 제46대 부총동아리연합회장	장우영
법제위원 前 중앙동아리 연세국궁부 회장	장은아	법제위원 제4대 학술교양분과위원장	홍지호

4.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0대 동아리운영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장	이윤상	부총동아리연합회장	장우영
공연예술분과위원장	홍근영	사회활동분과위원장	조해영
종교분과위원장	차윤민	창작예술분과위원장	전하준
체육분과위원장	김두현	학술교양분과위원장	홍지호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	이유근		

※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43조제5호에 따라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발의함.

참조 조문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9장 법제

제143조(회칙 개정안의 상정)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한 경우
2. 동아리운영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3.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4. 본회의 회원 15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5.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심의한 후 발의를 의결한 경우